

주택 임대차 신고

[임대차신고 관련 법률효력 상담처]

1. 용인시 법률무료상담
031-324-3196
(법무담당관실 소송지원팀)
-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

※ 운영일시 : 매주 월,화,목,금
- 월, 화, 목 : 16:00~18:00
- 금 : 15:00~17:00

2.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
031-526-6439

★ 주민센터에서는 신고권한만 있을뿐,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해석권한은 없음을 유의바랍니다. ★

1 신고대상

2021. 6. 1. 이후 계약한 **보증금 6천만원**

또는 **월세 30만원 초과** 주거용 주택

2 신고서류

주택임대차 계약서(원본), 방문자 신분증.

※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고 의무자 신분증 지참필수.

※ 위임자가 법인일 경우,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

3 신고의무

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**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** 신고

4 신고방법

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.molit.go.kr) 및

오프라인(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)

5 과태료 (계도기간: ~'23년 5월까지 연장)

2021. 6. 1. 이후 임대차 계약한 건에 관하여 **미신고**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
6 신고 제외 대상

- 2021. 6. 1. 이전 체결된 계약
- 2021. 6. 1. 이후 연장되었으나 금액변동이 없는 계약
- 계약 상대방이 국가기관(LH, SH등)인 계약
- 주거가 목적이 아닌 계약
-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
(예시 : 월세 30만원 X / 월세 30만 100원 O)

7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

- 당사자 인적사항 : 성명, 주소, 주민(법인)등록번호, 연락처
- 서명/날인(★): 계약서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(싸인은 불가. 이름 직접 기재 후 싸인은 가능) 또는 기명날인 여부
- 목적물 주소: 주택 소재지 주소 (호수미기재사례 多)
- 주거용 계약 여부 / 임대차기간 / 임대료 / 계약일자

8 유의사항

-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계약일은 입주일이 아닌 계약서 쓰신 날짜입니다.
※ 임대인 및 임차인 표기란 위쪽 계약서 작성일자
- 임대차기간 시작 전 해제된 계약은 해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- 신고내용은 인터넷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“임대차신고” 검색 > 임대차신고 홈페이지 > 지역 선택 후 “신고하기” > 다음 페이지에서 “신고이력 조회” 선택 >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.